산업혁신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규제개선의 방향

2021.5.13.

발표자: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지혜를 원한다. 정보는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다. 지혜는 뒤얽힌 사실들을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국의 음악가 마일스 킹턴은 '지식은 토마토가 과채류임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과일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에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 "

- 에릭와니너『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중

•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정보와 지식·경험의 산물이며,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규제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식"이 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 발표자



목 차

- Ⅰ. 행정규제개선제도 개관 및 공공계약 규제개선의 필요성
- Ⅱ. 공공계약 규제개선의 현황
- Ⅲ. 규제 샌드박스제도와 공공계약부문에의 시사점

Ⅳ. 공공계약 규제개선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행정규제 개선의 의의

가. 행정규제의 개념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는 행정규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더불어 일반적으로 법학에서는 규제를 기본권의 제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는 주체를 '정부'라고 한다면, 그동안 '규제'는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 정책의 근대적 국정 관리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
-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규제 기관과 규제 수단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정부 규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불필요한 국정수단으로 혹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장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임.



1. 행정규제 개선의 의의

나. 행정규제 개선의 의의

- 이러한 이유로 규제의 수를 줄이고, 규제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이 전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음
-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신이 기존의 규제와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관계를 야기하는 문제는 인류의 과학기술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를 이루어 왔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은 사회, 산업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문화와 정치의 풍경을 바꾸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법체계 내지 규제체계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그러나 초고속의 과학기술혁신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전통적인 규제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경쟁국가와 비교할 때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게 되고, 국가간 장벽이 없는 세계화 시대에 결국 우리는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체계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17.9월)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며, '20.5. 에는 그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하여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네거티브규제의 일반적 의미는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위 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규제를 말하는데, 정부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입장을 협의의 네거티브규제로 정의하면서, 포괄주의, 사후규제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라는 개념을 고안하였음





3. 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계약 규제개선의 필요성

-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年 135조원(GDP대비 7.1%, '19년 기준)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입찰참여기업도 58만개 업체 수준(19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 조달청 입찰참가업체 추이: ('15년)320만개→ ('17년)37.3만개→ ('19년) 57.5만개
- 다만, 공공조달은 시장에서 각종 안정인증(KC인증 등), 법정의무 형식승인·형식인증 등 법적·기술적으로 인증유통이 허용된 상용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신산업, 기술 융복합 제품의 빠른 출현에도, 이러한 조달원칙은 시장의 규제적 요소로 작용
 - 최근 계약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간의 물품·중심의 공공조달 수요가 디지털서비스 등 혁신기술, 융·복합 신산업으로 확대
 - 기존의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로 규정된 입·낙찰제도가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3. 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계약 규제개선의 필요성

- 최근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 통과 제품이 조달청 혁신시제품 사업참여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제품의 초기 수요 견인한 사례처럼, 지금까지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이 혁신제품 위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용역·시설공사 등에서 디지털혁신서비스, 혁신소프트웨어, 혁신적 공법 및 시설공사 생산체계 등으로 확대되려면 혁신 아이디어 수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계약제도 개선 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혁신적 계약입찰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계약제도 적용의 예외로서 시범사업이 가능한제도적근거마련
 -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 수행
- 이에 다만, 현재 공공계약분야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달청 등 중앙부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계약제도 개선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 미흡 등 신속한 규제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1. 공공기관 공공계약 특례(기획재정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은 당사자로 행하는 입찰·계약업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2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승인절차를 거쳐 공공계약 업무의 특례가 이루어짐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u>공</u> 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 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 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1. 공공기관 공공계약 특례(기획재정부)

- 다만, 동 사무규칙 제1항에서"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언급하듯, 다른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면 동 기관들은 당해 입찰·계약업무에 다른 법령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더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며, 특별법의 일반법(국가계약법) 배제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별도의 법률 근거를 가지고 국가계약법의 특례적 계약업무 운용 사례를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살펴볼 수 있음



1. 공공기관 공공계약 특례(기획재정부)

<2016~2020년 공공기관 계약 특례 승인 내역(기획재정부,2021년)>

		пна І				
순번	특례사항	구분1 (신규/변경)	특기사항	세부내용	승인시기	요청기관
1	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계약사무 특례	신규	구조조정 목적으로 은행 보유 자산을 타금융기관과 공동 매각	수의계약 대상 추가	16.2月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2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특례	신규	기타	하자담보책임기간	16.9月	한국토지주택공사
3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6.9月	한국수자원공사
4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6.11月	한국토지주택공사
5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6.11月	한국철도시설공단
6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6.11月	한국토지주택공사
7	한국국제협력단 계약특례	신규	해외사업	입찰 및 계약방법 등	17.3月	한국국제협력단
8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7.4月	한국도로공사
9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7.7月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서울대학교병원 대가지급 특례재승인	기간연장	대가지급	대가지급기한	17.7月	서울대학교병원
11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특례	신규	세입의원인	휴게소 입점업체 선정방법	17.8月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전력기술 수주사업 특례	신규	해외사업	수주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방법	17.8月	한국전력기술㈜
13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물품 구매 민간 위탁 특례 재승인	신규	구매대행 위탁	계약업무의 민간위탁 허용	17.12月	서울대학교병원
14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특례	신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정책	수의계약 대상 추가	17.12月	한국철도공사 등 다수기관
15	공공기관 구매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변경	내용변경	총리 지시사항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대기업참여제한	17.12月	공공기관 전체
16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연장	기간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8.3月	한국토지주택공사
17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8.4月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1. 공공기관 공공계약 특례(기획재정부)

<2016~2020년 공공기관 계약 특례 승인 내역(기획재정부,2021년)>

순번	특례사항	구분1	특기사항	세부내용	승인시기	요청기관
18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특례 (시공책임형CM,순수내역입찰)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8.5月	한국수자원공사
19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8.6月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20	한국전력기술 수주사업 특례 변경	내용변경	해외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9.3月	한국전력기술㈜
21	의료장비 구매대행 서비스 도입 특례	신규	구매대행 민간위탁	계약업무의 민간위탁 허용	19.3月	충남대학교병원
22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특례연장	기간연장	기타	하자담보책임기간	19.3月	한국토지주택공사
23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연장	기간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9.4月	한국수자원공사
24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연장	기간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9.4月	한국토지주택공사
25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특례연장	기간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9.5月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26	서울대학교병원 대가지급 특례재승인	기간연장	대가지급	대가지급기한 변경	19.7月	서울대학교병원
27	공사용 지급자재 물품구매 계약기준·절차 특례	신규	기타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와관급자재동일)	19.10月	한국토지주택공사
28	의료물품 계약사무 민간위탁 특례	신규	구매대행 민간위탁	계약업무의 민간위탁 허용	20.2月	강원대학교병원
2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연장	기간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0.3月	한국토지주택공사
30	국립대병원 대가지급 특례	신규	대가지급	대가지급기한 변경	20.6月	11개 국립대병원
31	건설업역폐지 시범사업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0.6月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32	강원랜드 계약특례	신규	기타	폐광지역법 내용을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	20.6月	강원랜드
33	건설업역폐지 시범사업	내용변경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0.10月	한국도로공사
34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특례연장	기간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0.10月	한국도로공사



2. 공공기관 자체 계약업무 규제개선 사례

• 산통부 주관하에 주요 산하 공기업이 조달시장 참여 범위 확대 및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계약 규제개선을 실행한 사례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완료일)
긴급공사 필요 시 수행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 (한국남부발전)	기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 업자"에 한정 → 더 우수한 공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공사실적 이 부족한 기타 사업자는 공사참여 기회 차단 개선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 업자" →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	공사관리규정 ('20.12월)
계약보증금 면제범위 네거티브화 (한국동서발전)	기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화 →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과중(계약금액의 10~15%) 및 복잡한 업무절차(보증서발급비용 등)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개선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계약상대자의계약보증금 면제	계약규정 ('20.5월)
협력업체 활용업무 확대 (대한석탄공사)	기존 석탄광 공사실적에 한정하여 그 밖의 협력업체 활용이 원칙적으로 불가 개선 석탄광 공사 실적 이외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승인	입찰공고문 ('20.4월)



3. 코로나19 긴급물자조달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 코로나19 팬데믹은 관련 긴급물자조달 및 신속한 계약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을 야기함. 이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계약방법의 결정, 입찰보증금 면제/감액, 비대면 온라인 평가 확대, 납품대금지급 간소화 등 다방면의 적극행정 대응이 진행되게 됨
-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 (조달청)

대표사례		계약원칙	적극행정	정(조치)	규정	rst tu	Ш¬	
		(기존)	적극해석	규정초월	개정	면책	비고	
	지문등록 면제	×		0	0	0	전염병 확산 우려 고려 예외 허용	
등록	민간(마스크유통업체)의 수요기관 등록	×	0			0	비상공급 목적 예외 허용	
	제조물품 현장조사	×		0	0	0	현장조사 유예 적용	
	마스크 수의계약 체결	×	0			0	'적합한 제조자 없는 경우'로 적극적용	
게아바베	마스크 공급업체와 계약	×	0			0	생산, 공급업체 모두 인정	
계약방법 결정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0			0	천재•지변 등 준하는 경우로 적극적용	
	5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		0	0	0	1억 이상 소액수의 한시적 적용	



3. 코로나19 긴급물자조달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 (조달청)

	FU ㅠ 1L34		적극행정	정(조치)	규정	rd tu	uг
대표사례		(기존)	적극해석	규정초월	개정	면책	비고
이차다기	입찰보증금 면제/감액	×	0		0	0	※ 적극해석(면제), 법령개정(감액)
입찰단계	기준가격 초과 인정	×	0			0	
심사	심사 협상계약 온라인평가 확대			0	0	0	10억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 허용
• 평가	건축 설계공모 온라인심사 확대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 허용
게아다게	계약보증금 면제/감액	×	0		0	0	※ 적극해석(면제), 법령개정(감액)
계약단계	조달수수료 면제	×	0			0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납품대금	조달요청 및 납품요구 단계 생략 (납품 先처리)	×	0			0	생산 즉시 납품 가능
지급 간소화	물품납품서류 제출 생략	×		0	0	0	납품 즉시 대금청구 및 지급

• 상기 자료에서 보듯, 긴급상황 대응 조달의 상황에서 법령 개정 소요가 발생하는 영역이 입찰참가자격등록, 수의계약의 금액기준, 입찰·계약보증금 면제/감액, 온라인평가 금액기준, 납품대금지급 간소화 기준 등 입찰 및 계약 전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4.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재부)

•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례 (조달청, 기재부)

과제명	추진현황	규정개선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성장유망 제품군 내 로봇분야 신설	기존 우수제품 선정 체계에 성장유망제품군은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로봇제품은 명시되지 않음 개선 성장유망제품군 내 로봇분야 신설 논의('20) 후 수요 감안하 여 우수제품 성장유망제품군 내 로봇분야 신설	우수조달물품지정공시 로봇분야 신설('21~'2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및 사업규모 확대	기존 시제품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 후 테스트, 상용화해주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을 도입, 공급자제안형으로 구매(19년) 개선 ① (구매대상) 기존 '혁신시제품' 이외, '우수 R&D제품' 및 '기술인정우수제품' 포함 * (Track I) 우수 R&D제품(소관부처) * (Track II) 혁신시제품(조달청) * (Track III) 기술인정우수제품(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② (사업방식) 기존 공급자제안형 이외,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수요자제안형 추가 도입(공급자+수요자제안형)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3 조 ('20.10.1 시행)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9조, 24조 ('20.10.1 시행)



4.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재부)

•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례 (조달청, 기재부)

과제명	추진현황	규정개선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	기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 신청자격을 부여 개선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우수 R&D제품' 및 '기술인정우수제품') 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하고 - 성장유망제품군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뒷받침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 정 제3조 제1항 제6호 (신청제품) 및 별지 제2호의2 '가'호 개정 ('20.9.1시행)
물품용역 신인도 심사항목을 유사항목으로 재분류	기존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심사항목이 통일성 없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적용가능 항목 찾기가 어려움 개선 유사목적 신인도 심사항목을 유연하게 재분류 및 심사항목 에 맞춰 평가요소 재배치 * (물품) 16개→6개, (용역) 14개→6개로 심사항목 개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1.2, 별표1~3('20.4.1시행)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7 ('20.4.1시행)
범정부 디지털 비대면 온라인 기술평가 지원 (한국판뉴딜)	기존 '19년 e-발주시스템 전면개방 이후 코로나로 인한 업무의 비대면화 및 서비스 확대 요구 개선 비대면 평가 확대 대비, 기능개선 * 대면⇒비대면 온라인 제안(화상)평가 플랫폼 개선	온라인 기술평가 서비스 자원 증설(12월) 및 기능 개선 추진('21.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유통플랫폼 구축	기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에 따라 수요기관, 조달업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몰 구축 필요 개선 단계별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구축	①나라장터쇼핑몰 개선 으로 거래몰 마련(10월) ②인공지능 기반 상품 검색 기능한 전용 쇼핑몰 구축(21년)



4.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재부)

•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례 (조달청, 기재부)

과제명	추진현황	규정개선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폐지	기존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포기한 자 포함 개선 국가계약법령 적용 입찰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 항 1호 마목 삭제('19.7시행)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2조('20.4.1시행)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 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 ('20.10.1시행) 등
용복합상품 등 신상품의 목록제조 등록절차 유연화	기존 물품 분류체계 상 복합상품과 융합상품의 정의·구분이 모호 * (복합상품) 2개이상 세부품명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신상품으로서 복합품명으로 등록(별도 물품 분류체계) * (융합상품) 기능, 재료 등 융화로 한 몸체를 이루는 새로운 상품(기 존 물품 분류체계) 개선 목록화지침 상 융•복합상품을 통합하여 재정의하고 99분류 로 운영하여 개념의 범위 확장	목록화지침 제2조 ('20.8.27 시행)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제조공장 분류 허용	기존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제조공장 확인 시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제조공장 인정 * 용도 :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선 500㎡ 미만 공장 미등록 소기업에 대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 확인 시 공장 분류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여 확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 산확인 기준 제9조 제6항 개정('20.7.1시행)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가. 규제 샌드박스 및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의 의의

- 규제 샌드박스(*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용어) 제도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됨
- 특히 과학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무수한 파괴적 혁신 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 이전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산업 간기술 간 융합이 보편화되는 등 '혁신'의 가치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다만, 기존 규제 체계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을 온전히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률의 보수적인 특성상, 기존 규제 체계가 현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혁신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완화 기제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제기됨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가. 규제 샌드박스 및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의 의의

- 체계적인 규제 샌드박스 논의는 '14년, 영국의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금융감독청(FCA) 관련 프로그램에서 규제 샌드박스 유래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15.5.~'18.7. 각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89개 프로젝트를 선정
- 이후 뒤에서 사려보는 바 대로, 일본, 미국 등에서도 아래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한편, 공공시장에서도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물품 및 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으며, 공공시장참가자들이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신산업신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2.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가. 영국

- 영국금융감독청(FCA)은 2014년 5월 29일 금융혁신 프로그램(Project Innovate)를 발표, 영국(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Mark Walport 수석과학자문관의 정책 제언에 따라 금융사업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regulatory sandbox)을 추진
- 금융서비스혁신기업들이 안전하게 신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실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사회적 편익 향상을 도모
- (절차)①스타트업이 혁신비즈니스 과제 신청, ②FCA 적용기준에 적합 여부 평가, ③FCA와 실험방법을 협의 설계, ④실험과 모니터링, ⑤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개시 여부 결정 단계로 이루어짐
- (실적)'16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153개 기업 선정, '20년도에는 22개 기업이 선정됨(6차)
- (평가)2017년 10월 평가보고서에서 긍정적 효과로 비용절감, 금융접근성 향상, 소비자 이익 확대 등 언급, 그러나, 테스트 결과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점, 금융기관간 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의 통합이 불가능한 점,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발견했을 경우 참가자가 즉각 반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
- FCA는 2018년 '글로벌 샌드박스'를 제안, 2019년 1월에 GFIN(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 국제금융혁신네트워크)를 설립, 현재 50여 개국이 가입, 혁신 금융기업이 국외에서도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참가국의 규제기관들이 협력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함





2.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나. 미국

- 미국은 아직 전체 연방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2018년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에 규제 샌드박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후 각 주 별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행 규제와 맞지 않을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덜 규제된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가 바탕으로 규제 법안을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목표
- 애리조나 주가 최초로 24개월간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이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주들도 잇달아 입법 노력
- '20년 기준 애리조나 주, 와이오밍 주, 유타 주, 플로리다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네바다 주 6개 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각 주마다 시스템과 기준이 다름
- (실적)애리조나 주에서 3건의 선정 사례가 있으며, 다른 주는 아직 선정 사례가 없음

기업명	사업 내용
Align Income Share Funding	고객의 예정된 기간의 미래 수익의 몇 퍼센트를 지불하는 대신, 소득 감소 및 실업 기간을 포함한 예기치 못한 사태에 검증된 소비자에게 고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소득 공유(ISA) 비즈니스 모델
Zona Digital Commodity, LLC	허가된 의료용 마리화나 제공자들을 위한 현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판매와 연결된 송금 서비스를 활용하는 제정 서비스 "클럽"
WithClutch, LLC	사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 소매 설치 계약에 대한 재융자(refinancing) 비즈니스 모델





2.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다. 일본

-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4차 산업 혁신 기술을 적용해 해결하기 위해 "Society 5.0 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와 비즈니스 모델 실증(Try First)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 지역한정형과 프로젝트형 두 가지 유형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며,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실증 인정 사례는 없으나 기반법률의 역할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총 20건의 과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증 인정됨
 - IoT 사회 실현을 위한 고속 PLC(전력선통신)로 연결되는 가정용 기기 / IoT를 활용한 차세대 광역 리사이클
 - 가상화폐와 법정통화를 동시에 결제 가능한 결제 플랫폼 구축/잠재적 IT스킬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기회 창출
 - 사칭에 의한 부정한 계좌 방지 / SMS를 이용한 채권양도통보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임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 럭비 등의 국제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한 실시간 체혈검사
 - 생체인증을 이용한 본인의사에 기반한 구급의료 / 진단키트와 비디오 통신을 연계한 인플루엔자 온라인 검진 권유
 - 비상사태 시 상호부조를 위한 대규모 P2P 특약 / 개인이 소액출자를 통해 상호부조하는 P2P보험
 - 부동산 임대계약 시의 서면교부의 전자화
 -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월세임대 사업에 관한 정기건물임대차계약서면의 작성
 - 캠핑카의 공간 활용 / 야채, 과일 등의 일반적 특징을 표시하는 POP에 관한 자율 매뉴얼의 작성
 -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의 실시를 위한 주행 / 인력과 전동모드의 전환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바이크의 레인 주행





2.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라.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 건설을 추진하며 금융 분야에서 혁신유발형 금융환경 조성을 꾀하기 위해 싱가포르 통화청이 2016년 6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행안'을 발표
- 싱가포르 통화청은 관련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11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 및 원칙, 평가요건, 절차 등을 제시
- (실적)싱가포르 통화청은 시행 이후 7개의 핀테크 스타트업, 1개의 기존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총 8개의 기업을 선정, 주요 사업내용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리/예탁, 보험중개업, 온라인 환전송금, AI 기반 자산관리
- (평가)싱가포르 통화청은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정한 것으로 평가
- 당초 기대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패스트 트랙(Sandbox Express)를 도입하기도 함
- 3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졸업 이후 31백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며 활발한 투자유치 및 금융혁신에 성공 기여한 것으로 평가





3.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가. 연혁

- 우리 정부는 '17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규제개혁의 의지 표명
 - 우선허용과 사후규제를 통해 혁신기술과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제도적 혁신으로서, '19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 * 규제 샌드박스 법적근거 : 정보통신융합법 등 4대 규제 샌드박스 입법내용을 총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개정
 - 신기술 서비스 제품 관련 규제에 적용(19.7.17)



3.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나. 체계 및 현황

제도총괄

시행일: 2019.7.17.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스마트도시법
시행일	2019.1.17.	2019.1.17.	2019.4.17.	2019.4.1.	2020.2.2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심의 위원회 (위원장)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장관)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장관)	심의위원회(장관) 특구위원회(총리)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국토부장관)
신청창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지방중기청 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지원유형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속확인	스마트규제 혁신지구지정 및 사업 승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기타지원			메뉴판식특례 금융·세제 지원		

- 1) 각 법령, 규제정보포탈, 관계부처 합동(2020) 이용하여 정리
- 2) 성과자료: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2021.2.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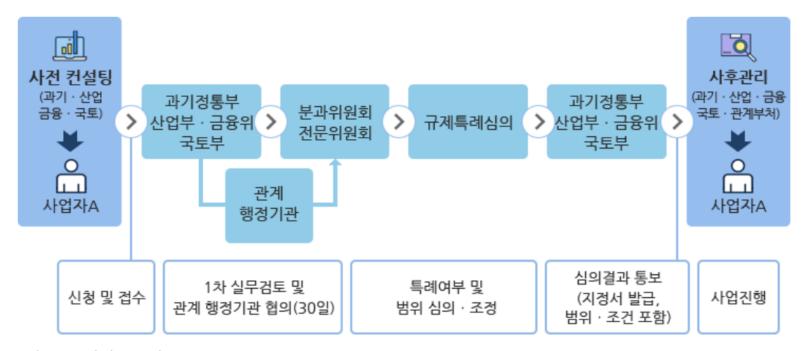




3.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다. 절차

<대한민국 규제 샌드박스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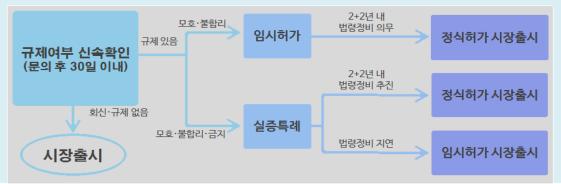
자료: 규제정보포털



3.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다. 절차

- 접수된 규제 특례 신청에 대해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절차로 대응
 - **(신속확인)** 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와 관련해 신청인이 관련 허가 및 규제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관부처에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일괄 확인하여 신속히 회신함
 - **(임시허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사업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나, 관련 제도나 법령이 불합리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될 경우 일정 기간 우선적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정식허가에 임함
 - (실증특례) 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해당 법령의 불합리성이나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임시허가와 구별되는 실증규제특례의 주요한 차이점은 현행 규제에서 금지불허인 사업이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는 것임





3.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라. 집행 실적

- '19.1. 도입 이후 21.1.현재까지 410건 과제 승인, 1조 4천억 이상 투자유치, 2,800여명 일자리 창출의 집행 실적이 집계됨(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2021.22)
- 분야별 국내 규제 샌드박스 집행 사례
 - ①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 ②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 ③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 ④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 ⑤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 '19.1.~'20.1. 2년간 총 51차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410건('19년 195건, '20년 209건 '21년 6건)의 과제가 승인됨

유형별	실증특례 332건(81%), 임시허가 48건(12%), 적극행정 30건(30건)
분야별	혁신금융 137건(33%), 산업융합 102건(25%), ICT융합 90건(22%), 규제자유특구 65건(16%), 스마트도시 16건(4%)
기술별	에너지 42건(10%), loT 39건(10%), 의료바이오 33건(8%), 빅데이터 32건(8%), 블록체인 26건(6%), AI(6%), 기타 212건(52%)
규제부처별	금융위가 118건(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복지부 순으로 나타남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274건(67%)로 대기업 116건(28%), 공기업20건(5%)

•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등이 입증된 60건의 승인과제(규제법력 31개)는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체계는 금융 핀테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영국, 미국 등에서와 달리, 산업 전분야를 포괄하는 특징을 지님
- 각국 규제 샌드박스 현황 개관

항목	영국	일본	미국	한국
주무부처 (사업담당)	재무부	경제산업성	연방 시행 전, 애리조나주 등 시행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시행 시점	′16년 5월	′18년 6월	'18년 8월	′19년 1월
대상 산업	금융 핀테크	전 산업	에리조나주 : 금융 핀테크	전 산업
주요특징	- 세계최초시행 - 코호트 운영 - 선정 5~6개월	- 일몰제도 - 해외기업가능 - 그레이존 해소제도	- 주 단위 운영	- 부처별 운영



- 특히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체계가 앞서 살펴본 바 대로 ICT, 산업융합, 금융, 스마트시티 등으로 확대되어온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가 허용되는 일반적 요건을 ①영업영역, ②혁신의 독창성,③소비자보호조치 등으로 제시한 견해*가 있음
 - (영업영역) 해당 영업영역이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혹은 전체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으로서, 신기술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본질적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신고 또는 허가로 하여 기속적 규율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량판단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업역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혁신의 독창성)** 만약에 이미 인허가를 받은 기술적 구조를 가지고 재화 내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사업자와의 다른 취급은 평등의 원칙의 위반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리 위반을 구성하게 되며, 아울러 제3자가 제기하는 경쟁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독창성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제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임
- * 김대인·최승필·임현,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 제3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2017, 한국법제연구원, 76~77면.





- (소비자보호조치) 새로운 기술이 재화나 서비스로 제공될 경우 위험적 요소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기술의 독창성으로 인한 규제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항은 구제가 필요함
- 이러한 영업영역, 혁신의 독창성, 소비자보호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등의 관점과 더불어, 현행 5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시장에서의 공공계약제도 규제 샌드박스 논의를 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분야별 특이성과 시대상황을 반영한 규제개선의 의제 정립 필요) 과거 국내 생산 산업기반이 일천하던 시기에는 국내 (중소)기업 생산시설 구축 및 보호 생태계 마련이 규제개선의 중요 의제였으나, 4차산업 혁명을 준비하는 현행 시기에는 혁신제품 및 서비스의 진입 여건 확대 및 다양성 제고가 중요한 규제개선 의제로 부상함



- (규제개선시 이해관계 조정 및 관련 부처 협조의 중요성) 규제 샌드박스 사업 종료 이후 정식허가를 위한 법 개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 및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이 중요
 - 2019년 카카오T 카풀서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인해 잠정적으로 서비스 중단 선언
 - 카풀서비스는 택시요금의 70~80% 수준의 가격으로 소비자의 기대가 컸으며 시범서비스 일주일간 드라이버 7만 명이 신청(5만 명 인증)하였으나, 서비스의 이용자 편익과 사회적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로 남음

2018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럭시 252억원 인수
7월	국토교통부, 카풀 운전자 당 1일 2회 중재안 제안
8월 27일	택시업계, 카풀 시간 제한 제안 거부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출범
11월 14일/20일	택시·카풀 TF 간담회
12월 7일	카카오T 카풀 베타서비스 시작
12월 10일	택시기사 최모씨 분신
12월 13일	카카오T 정식 출시(17일 예정) 연기 발표
2019년 1월 9일	택시기사 임모씨 분신
1월 22일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2월 11일	택시기사 김모씨 분신







Ⅲ.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공공계약부문에의 시사점

4.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의 시사점

- (규제개선시 이해관계 조정 및 관련 부처 협조의 중요성) 임시허가 1호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 서비스'의 경우 소관부처가 농림부와 산업부 기술표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관업무불명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2017년 당시에 정식허가 난항
- 임시허가 1호 사업 사업 추진 연혁









1.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및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전제로, 공공시장의 특이성을 반영한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체계의 마련 필요
- 우선, 공공계약규제개선의 의제를 설정하는 원칙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의 중요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정효율성 및 공정·경쟁성 유지) 공공계약 규제개선의 기본원칙을 상정해 본다면, 먼저 경제적 조달계약을 의미하는 재정효율성 달성이 1차적 원칙이 될 것임.*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물자조달을 행하는 국가조달계약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핵심과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재정효율성 달성의 구체적 기재는 경쟁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절차 마련이라 할 수 있음
- * 정부의 모든 재정운용의 준칙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재정부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제8조에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천명하고 있음.



1.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조달의 부가) 한편 정부는 2018년 11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초기시장부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극 반영해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였음
 - 더불어 최근 개정 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1항제2호에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혁신 조달
 - 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 (공공조달계약 방식의 유연화효율화다양성* 제고) 앞서 혁신조달시제품 제도나 마스크 공급 사례에서 보듯,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산업 및 방역 등 긴급조달상황과 관련해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계약방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형태는 확정계약/개산계약, 총액계약/단가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방위사업법」은 확정계약에도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장기옵션계약 등이 있고, 개산계약도 중도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다양한 계약형태가 운용되고 있음
- (규제 개선 관련 이해관계 조정절차 마련) 일정 특례사항은 특정 공급자군에게는 새로운 기회확대의 계기가 되지만, 또 다른 공급자군에게는 유지해오던 공급기회가 축소 또는 박탈될 여지가 있으며, 타부처 소관의 법령에 규정된 내용(예:의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업역제한, 인·허가 사항 등)과의 상충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특례의 범위와 이해관계의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를 별도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1.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 예를 들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의 직접생산확인기준에 관해, 동 기준이 규제개선 차원에서 대폭 완화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 동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확충을 해온 기존 종소기업과 신규 진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이하의 공사 "일괄입찰"(소위 "턴키계약")에 대한 대상 시설 확대를 규제개선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법규 개정이 아니라, 일괄입찰 심의대상시설 및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개정이 필요로 함
- 한편, 2020년 10월부터 시행중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경우, 디지털 혁신 산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이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이룬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합동 분과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유관 부처 담당자와 참여하에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항의 일괄상정·처리 방안 검토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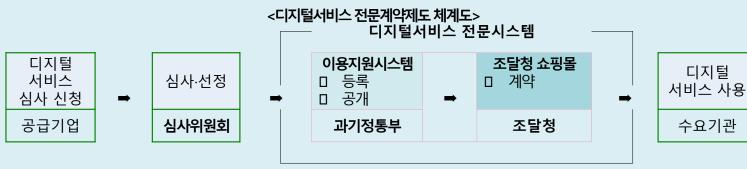


1.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부처협업 사례>

1.정의 및 내용

-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를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상품 안내서) 형태로 준비한 뒤, 수요기관이 쇼핑몰을 통해 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약체계를 말함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구매 요청

2. 부처별 협력 내용

• 유관 3개부처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 개정 진행과 더불어 동 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함

소관 부처	하위 규정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기획재정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디지털서비스 계약 관련 내용 반영)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정

• 자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정부공공기관의 민간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대"(정부 보도자료 (2020)922))





2. 공공계약 분야 규제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가. 공공계약 분야 규제 개선의 현행 법적 근거

• 현행 1) 공공기관 계약 특례제도(기획재정부), 2) 조달시장 참여 범위 확대 및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제 개선(공기업 등), 3) 코로나19 등 긴급물자조달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4) 혁신제품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공계약 규제개선 관련 법적 근거

구 분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적극행정	헌법 제7조(공무원의 책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
공공기관 계약 특례	-	<u>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u>
시범사업(특례)	-	<u>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u>
감염병 등 긴급조달 규제 특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하부규정	-
혁신조달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하위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



2. 공공계약 분야 규제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 (공공조달 특례의 내용 및 절차 미비 개선 필요) 현재 혁신조달, 감염병 등 긴급조달과 관련된 특례사항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 개선을 통해 그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계약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시범사업 운용과 전체적 공공조달 특례절차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기존 규제 샌드박스 입법 사례의 공공조달 특례 벤치마킹 필요)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법들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 및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익적 가치의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신기술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규제 3종 세트(①규제의 신속 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응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규제의 신속 확인은 신기술·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등에 허가 등 기존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30일 이내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내용임



2. 공공계약 분야 규제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 공공계약분야 또한 규제개선 수요 상황에 따라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에 대응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함
- <공공계약건의 유형별 규제대응 입법 방향>

구분	대응 방향	절차	입법적 대응
해석으로 법령위반 아님을 규명 가능한 경우	적극행정/실행 필요 영역	집행	신속확인
버려사 창요디트지 미층하 경으	심의절차/기준 마련 필요	기준마련·위원회 등	임시허가
법령상 허용되는지 모호한 경우	영역	심의→집행	급시어기
	단계적 접근 필요 영역	1차 임시허용→시범	
법령 위반이 명백하지만 허용필요성이 큰 경우		사업/평가→법령개선	실증특례
		→허용(부분/전체)	

-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실무 지원체계의 마련) 한편, 특례 사안 발굴 및 접수, 제기 사안의 영향도 분석·평가, 특례승인의 기준 및 요건 마련, 특례 운영의 성과 분석, 특례 운영의 지속 여부 검토를 위한 실무 지원체계 마련 필요 ⇒ 가칭 "공공계약 규제혁신 지원센터" 설치 필요





3.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방안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1)유사 규제 샌드박스 법제 적용안(제1안)

- (①공공계약 규제 신속확인 제도) 본래 유사 규제 샌드박스 법제에서의 규제 "신속 확인"은 신기술·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등에 허가 등 기존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30일 이내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공공계약제도의 특성상 부처 회신 부재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움
- 다만, 신기술·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시장 진입에 있어, 규제 문의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은 필요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제00조(혁신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시장 관련 규제내용 신속확인) ①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공공시장에 참여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 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시장 진입 규제 내용 확인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혁신 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시장 참여 관련 규제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0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공공시장 참여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따라는속하다라여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공공시장 참여를 위한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방안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1)유사 규제 샌드박스 법제 적용안(제1안)

- (②공공계약 규제 임시허가 제도) 임시허가는 혁신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모호 또는 불합리로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조기에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한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으로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에게 관계 법령을 반드시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 관련 국가 계약법 개정 예시

제00조(임시허가) ①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공공시장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공공시장 참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1.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맞는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② 관계기관의 장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 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방안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1)유사 규제 샌드박스 법제 적용안(제1안)

- (②공공계약 규제 임시허가 제도)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 ·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 · 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시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00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0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제00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제00조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 서비스를 판매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방안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1)유사 규제 샌드박스 법제 적용안(제1안)

• (③공공계약 실증특례 제도) 유사한 규제 샌드박스 법제 사례에서의 규제 "실증특례"는 관계법령의 모호, 불합리 또는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을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하여 기간·구역·규모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한 조건에서 기존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개발중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시장에 안착시키는 테스트베드 공공계약유형에 동 "실증특례" 제도를 응용할 수 있을 것임

제0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시장에 참여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 •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 •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1.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방안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1)유사 규제 샌드박스 법제 적용안(제1안)

- (③공공계약 실증특례 제도)
 - 1.해당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 2관련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3.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 5.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통지,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 • 감독한다.

- ②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 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회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장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6]





3.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방안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2)규제혁신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제2안)

- 제1안의 국가계약법 개정의 경우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입법사례에 충실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소 복잡한 단점이 존재
- 따라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계약 샌드박스의 핵심논지인 계약방식의 유연화다양화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어, 새로운 입찰 및 계약제도의 도입, 특례적 계약조건의 운용, 시범사업의 운용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조문 신설 개정안을 제시함
 - 계약방식의 유연화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제2안)

제00조(기술 혁신 관련 신규 입찰·계약 방식 도입과 시범사업의 실시)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혁신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입찰 및 계약제도의 도입, 관련 계약조건 등의 운용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입찰 및 계약방식, 특례 사항의 내용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입찰 및 계약방식의 마련, 특례 사항의 인정 또는 관련 시범사업 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방안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3)중앙부처의 국가계약법의 기준 절차 유연화에 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제3안)

- 제1·2안의 국가계약법 개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절차, 타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국가계약법령 체계에서 대부분의 경쟁·수의 등 계약방식과 낙찰자결정방식이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바에 착안하여, 공공계약 샌드박스의 핵심논지인 계약방식의 유연화다양화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중앙부처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혁신의 플랫폼 역할 기대)** 신규계약제도 도입 이전에 시범사업을 수행해 본 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가 필요하나, 공공기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시범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상당기간 소요되어 충분한 시범사업 확보 미흡
- 따라서, 맞춤형서비스 사업 또는 계약요청 건을 대상으로 기재부 특례 절차를 간소화해 Fast Track으로 시범사업 수행하기 위해 조달청 등 중앙부처가 기재부와의 협의하에 직접 계약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방안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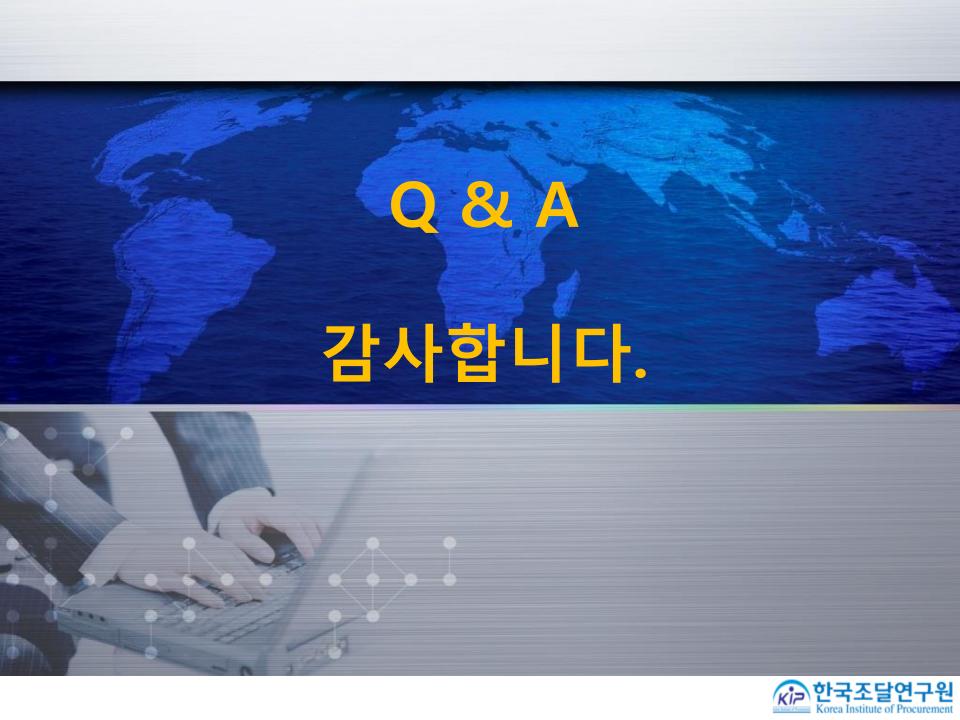
3)중앙부처의 국가계약법의 기준 절차 유연화에 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제3안)

•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계약 방식의 유연화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형식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조의 부분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의 기준·절차 유연화에 한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함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현행과 같음)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u>< 신 설 ></u>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 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
	<u> </u>

^{*} 자료: 조달청 시설총괄과(2021.03.)









[제2차 조달정책세미나]

공공 조달과 민간 쇼핑몰 협업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2021년 5월 13일

김 정 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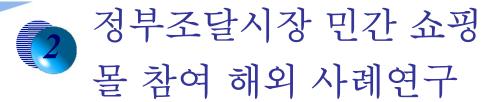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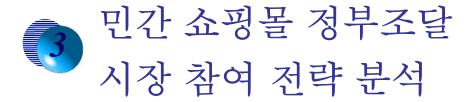


서론





4



25



결과 요약과 시사점

31



I. 从론

가. 사례 검토 배경



민간시장의 전자 상거래 이용규모 지속적 증가 수요 기관(구매담당자)의 민간 인터넷 쇼핑몰 이용경험 증가



국가 계약 물품 및 서비스 지속적 증가 및 일부 민관 규격 불일치



민간 가격과 관급 가격 일부 차이: 조달 최저가격 원칙 신뢰성 우려

공공조달의 정책적 목표실현 객관성과 효율성 확보 요구



공공조달 구매 경험 향상 요구 : 수요기관의 요구 다양화

수요기관의 구매 방식 다양화를 위한 분석 및 시사점 제언

나. 사례 검토 범위



사례 검토 범위

"정부조달 계약 물품에 대한 해외 조달 기관의 전자적 운영/관리 사례조사(분석)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달 기관의 조달 운영관리에 대한 시사점 도출"

1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민간 쇼핑몰 활용 관련 진행 사항 조사
2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민간 쇼핑몰 활용에 대한 미국 내 다양한 논의 사항 조사
3 중국, 영국 등 해외 공공조달기관의 인터넷 쇼핑몰 관련 운영 사례 조사
정부조달시장 민간 쇼핑몰 참여에 따른 법령정비 등 제반 검토 사항 논의



Ⅲ. 정부조달 시장 민간 쇼핑몰 참여 해외 사례연구

- 가. 미국 NDAA Sec.846 관련 사항 요약
 - 나. GSA&OMB의 Procurement through Commercial E-commerce Portals 계획
 - 다. 정부조달시장 민간 쇼핑몰 활용에 따른 미국 내부 동향 분석
 - 라. 중국 지방(성)정부 조달 민간 쇼핑몰 활용 사례
 - 마. 영국 CCS의 The Purchasing Platform 구축 사례

가. 미국 NDAA Sec.846 관련 진행사항 요약



NDAA Sec.846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 요약

2015년 4월 Amazon Business 사업 시작



2017년 Amazon Business 주(지방)정부 <u>등 조달시장 참여 시작</u>

(U.S. Communities 등과 협약)

☞ 2016년 OMB^쥐수석 조달관(Chief Acquisition Officer) 앤 령(Anne Rung) 전격 스카우트; 정부조달사업 진출을 위한 진출전략 계획 수립 등 노력 일환 "By the Amazon, For the Amazon, Of the Amazon…."

2020년 3월 Phase 3 권고(안) 발표



2020년 3-6월 대상기업 협상/선정



<u>2020년</u> <u>8-9월</u> Pilot Program

For government

Pilot Program 운영 시작



격관리 등 조달

이슈 지속 제기

☞ 국방수권법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 국방부 매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법안

2019년 4월

Phase 2 권고(안) 발표



전체 연방기관 대상 확대

2018년 3월

Phase 1 권고(안) 발표



2018년 1월

Procurement through
Commercial E-Commerce
Portals 계획 발표

주)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미국 행정관리예산국);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정부기관 프로그램과 예산 정책 집행을 관리/감시하는 기관

가. 미국 NDAA Sec.846 관련 진행사항 요약



- NDAA Sec.846(2018) [일명 Amazon Amendment)의 입법취지와 주요 추진 목표
- <u>상용제품(COTS)</u>에 대한 국방 구매를 <u>기술 및 사회적 변화</u>에 부응하여 <u>다음과 같은 목적</u>이 달성될 수 있도록 <u>상업용 전자상거래 민간 쇼핑몰(e-commerce portals)</u>에서 수요기관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법적 요건 등] 마련

① 국방조달에서의 경쟁 제고(enhancing competition)

FY 2018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NDAA, Section 846

- ❷ 국방조달 <u>구매 업무 간소화(expediting procurement)</u>
- ③ 국방조달에서의 시장조사기능 활성화(enabling market research) → 이후 약화
- ④ 국방조달에서의 <u>합리적인 가격책정(ensuring reasonable pricing)</u> → 이후 약화

■ GSA와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주)}의 전략 실행계획 발표





- 주) 미국 행정관리예산국;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정부기관의 프로그램과 예산 정책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
- 당초 미국 하원이 입법했던 법안이 상원 등 이해 관계자 반대로 수정 입법
 - ☞ 미국 하원은 당초 연방기관 조달을 민간 전자상거래 유통 기업들에 완전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산업계 및 이 해관계자 집단의 이의제기에 따라 사전 의견수렴/계획수립을 위한 유예 기간을 설정 (상원 반대로 계획 수정)



- GSA와 OMB의 "Procurement through Commercial E-Commerce Portals" 계획
 - ①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 1단계): 2017년 12월 ~ 2018년 3월(3개월)
 - 예비조사 (관련자 확대 검토 간담회): 2018년 1월
 - 1단계 이행 검토보고서 : 2018년 3월 발표 (Phase 1)
 - ❷ 시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Market Research and Consultation; 2단계): 2018년 4월 ~2019년 3월(12개월)
 - 2단계 이행 확정 및 검토 보고서 : 2019년 4월 발표 (Phase 2)
 - ③ 프로그램 세부 지침 마련(Program Implementation Guidance; 3단계): 2019년 4월 ~ 2020년 3월(12개월)
 - 2020년 3월 Pilot Program Test 계획 발표 및 계약업체 선정/협상 개시 (Phase 3)







Implementation Plan : Phase 1-(예비조사)

- 상업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3가지 주요 논의 분야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82개 혐의 및 조정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 ①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설계(General program design): 29개
 - 기존의 상업용 전자상거래 포털기업이 정부조달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또는 제시)해야 하는 상업적 조건(상업적 표준 약관 등)은 무엇인가?, 법령 시행의 목표달성을 위해 포털기업은 최소 몇 개 이상 참여해야 하는가? 현존하는 e-commerce 사업 모형들 중 어떤 사업 모형이 상용제품(COTS)에 적합한가?, 최소구매 한도금액(MPT; micro-purchase threshold)과 단순 조달 한도금액(SAT;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기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등
 - ② 상업용 전자상거래 포털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구매 실례 (Buying practices): 32개
 - 상업용 전자상거래 포털기업을 통한 구매가 현행 연방정부 전자거래시스템 구매보다 과연 경쟁적이라 할 수 있는가?, MPT와 SAT 금액 간에 속하는 모든 구매를 경쟁측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상업용 전자상거래 포털기업은 상용제품 납품계약 시 가격, 납품 및 기타 판매조건 등을 정부기관의 고려사항 및 조건과 동일하게 수행하는가? 등
 - ③ 민간 쇼핑몰 기업의 정부조달 참여 실행에 따른 세부 고려사항(Implementation): 21개
 - 상용제품구매에 대한 정부의 기존 법령체계를 상업용 전자상거래 포털기업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 문제는 무엇인가?, 특정 품목 구매를 상업용 전자상거래 포털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기본 법령체계 중 어느 수준까지 변경해야 하는가?, 상업용 전자상 거래 포털기업의 국가조달 참여에 따른 잠재적인 편익(정부와 민간 부분)과 위험은 무엇인가?
- <u>2018년 1월</u>,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u>비공개 간담회 개최</u>
 - 총 76개 관련기관 및 개인 참여 → 법률자문 1, 관련 개인 전문가 2, 관련 산업 협회 등 10, 포털 사업자 7, 공급
 (또는 유통)기업 11(Amazon, Staples, Grainger 등), 관련 사회단체 45(U.S. Communities, CoGP 등)



Implementation Plan : Phase 1



2018년 3월, 1단계 이행 결과

상용제품(COTS) 정부조달 민간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주요 목표 설정

① 수요 기관 조달 조직(이용자)의 구매 경험 최적화와 현대화

- → 상용제품 구매업무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춘 전자적 방법으로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정부조달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참여 인력 축소 등을 통한 조달업무 효율성(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 → 연방 수요 기관의 구매 조달 경험을 시장변화에서 민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구매 경험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대화
- → 상업용 전자상거래 포털 기업을 정부(사업)의 매력적인 동반자/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② Best-Value 구매에 가치 중점

- → 최저가격보다는 구매관련 제반 비용, 배송관리, 유지보수 관리 등 실질적인 가치증가요인에 보다 중점
- → 정부관리방식이 아닌 민간 시장거래 방식 도입을 통한 경쟁관계 유지로 Best-Value 구매에 따른 수요 기관 신뢰도 향상

③ 정부의 민간시장질서 개입에 대한 우려 차단

→ 수요 기관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과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 협의 시행 및 수정사항 적극적 반영

④ 조달 납품기업들의 부담 경감

→ 정부조달에 접근하기 위하여 조달 납품기업들이 부담하는 행정 및 재정적 업무부담 최소화 기회 부여



Implementation Plan : Phase 1 주요 결정 내용 (1)

- ①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 기업을 통한 정부조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적용을 위하여 전체 이행 계획을 <u>단계적 접근방식(Step by step)</u>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
- ② 전자상거래 관련 <u>현행 상업용 약관</u>과 <u>정부 규정(요구) 간</u>의 <u>균형</u> 문제
 -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u>상업용 약관을 가급적 활용</u>하도록 노력하며, 정부가 필요로 하는 특유의 요 구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도록 권고
- ③ 정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수요 기관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 강화
 - 정부조달 필수이행 관련법령(예; Javits-Wagner-O'Day Act, Trade Agreements Act, Buy American Act) 및 정부조달 요구사항(예; Set-Asides 조항, 거래자료 관리에 대한 정부권한, 전반적인 공급관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배송 안정성 확보, 제품 표준규격 확보 등) 등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정책 필수 제안 사항 준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설명과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안내) 강화



Implementation Plan : Phase 1 주요 결정 내용 (2)

④ 민간 쇼핑몰을 통한 정부조달의 실현 가치 설정

- 사업 실행의 가장 중요한 달성 목표가 <u>최저가격 실현이 아닌 최적 가치(Best Value) 실현</u>에 있음을 명시
- 수요 기관은 품목의 단가 이외 기타 요인(예; 배송비용, 납품 조건, 이행보증), 즉 제품과 관련된 총 비용 및 개별 기관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매에 임하여야 함

⑤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

-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을 통해 정부에 상용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모든 납품 기업들에게 시장을 완전 개방할 수 있는 규정 및 조치를 마련: 민간 포털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 등 사전 방지 목적
-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 기업이 부과하는 <u>이용 수수료</u>는 모든 정부기관 및 조달 납품 기업들에게 전체 내역(수정 및 변경 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며, <u>특히 수수료 체계의 수정 및 변경 시 즉시 공지 및 이유 기재</u>

⑥ 거래관련 자료의 소유권 및 보안 문제

- GSA는 본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 및 거래내역 이행 전반에 걸친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타 상업적 이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관리)를 기울여야 함
- 예상되는 공급관리상의 위험(예; 전자상거래상의 사이버 해킹 위협 및 주문내역과 다른 물품의 배송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민간 규정(상업적 약관 확장 등) 마련이 필요



Implementation Plan : Phase 1 주요 결정 내용 (3)

⑦ 계약 위험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정부 구매 시 발생 위험에 대한 책임이 기존의 수요 기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요 기관 소속 구매카드 이용가능자 (소지자)로 전환 → 이와 관련된 책임소재 여부를 확정(또는 책임소재 경감)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

⑧ 상업용 전자상거래 포털 내부거래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위계(대립) 문제

- 포털기업 자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참여납품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우월한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포털 내부구조가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준수가 아닌 포털이 규정한 경영논리 (포털기업이 추천하는 주요 거래 품목에 대한 결정권) 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함

⑨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 기업에게 효율적인 가격경쟁구조(가격관리) 책무 부여 확인

- 기존 정부조달 계약방식(MAS 등)은 수요기관 및 조달참여기업들 간 중복계약 등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
- 그러나 계약체결 품목과 조달참여기업 및 계약 건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최저가격 수준 유지, 가격인하 조항 준수라는 경제성 및 효율성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음
- GSA와 계약된 포털기업은 가격관리 기능을 GSA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함; 즉, 민간 포털에서의 가격 결정은 거래에 참여한 참여기업들 사이의 시장경쟁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달기관이 계산하거나 목표로 하는 최저가격 아닌 실제시장에서 형성/통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 시장실례가격으로 **판단함**



Market Research & Consultation : Phase 2



2019년 4월 2단계 이행 결과

정부조달 민간 인터넷 쇼핑몰 진입에 대한 개념 증명 (Proof of Concept) 사업

-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의 성공적인 정부조달 참여를 위한 <u>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평가 사업을</u> <u>우선 실시</u>하여, 향후 실행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로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확정
 - ※ 개념증명 사업수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 MPT 금액 상향조정(\$25,000 이하) 권고 ※
 - → 실제 GSA가 주정부 및 기타 정부 수요기관의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을 통한 GPC 프로그램 활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구매의 상당부분이 해당 금액에서 실행 → 2014년 회계연도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거래가 약 135만 달러 지출(\$3,000 한도), 2018년 MPT 1만 달러 증액 이후 정부구매규모가 약 2억 6천만 달러로 증가 확인
- GSA 개념증명 평가 실행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u>주요 결정사항</u>
 - ① MPT 금액 범위 이내(\$25,000 이내)의,
 - ② 지정된 금지품목(IT. 의료관련 제품 등)을 제외한 모든 정부조달 상용 제품을 대상으로,
 - ③ 국방부를 포함한 전체 연방기관이 참여하며,
 - ④ 개념증명평가 프로그램 최초 시행 이후 5년 간의 한정된 기간 동안,
 - ⑤ E-마켓플레이스 사업모형을 활용하는 복수의 포털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실시
 - ☞ 정부구매카드(GPC; Government Purchase Card; 정부구매전용 법인카드) 구매촉진 방안 포함



Market Research & Consultation : Phase 2

개념 증명 평가프로그램 실행(5년 한시적)을 위한 세부 확정 사항

- 이용 수수료 : 민간 포털 기업이 기존에 적용하던 수수료 체계를 최대한 활용(수요 기관 선택권 존중)
 - → 민간 전자상거래 사업 모형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 체계는 크게 2가지
 - ①포털기업이 조달(납품)기업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고정 및 변동수수료; 품목별 수수료 또는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
 - ②구매자(수요기관) 부과 수수료(거래 동향 분석 및 고객요구정보 분석과 같은 서비스 부과 수수료)
- ❷ 실행 품목 : 기본적으로 민간 포털기업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용 제품을 실행 대상품목으로 고려
 - → 다만, 시장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IT 및 의료 관련 제품을 취급품목 대상에서 제외
- ❸ 거래 약관: 기본적으로 기존 상업용 거래 약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다음의 사항을 핵심적으로 고려
 - ① 정부기관 사용자를 위한 고유 계정생성, 제품평가, 공급기업 평가, 주문처리 인증, 가능한 이용대상자 식별
 - ② 공급기업 식별기준(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정부 수요기관 사용자에 관한 약관 내 용어 정리, 검색 시 제품 필터링 기준, 정책별 대상기업 식별 기준
 - ③ 거래관련 자료 활용과 분석범위 및 종류, 검색 가능한 전체 물품의 범위, 거래관련 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④ 적용 수수료 상세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수수료 체계 변동 시 공지 방법과 시기
 - ⑤ 수요기관의 의무적 정책실행을 위한 중소기업, 약자기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방법
 - 이와 함께 정책목표 실행을 위한 기업제품의 대체/대안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



Market Research & Consultation : Phase 2

개념 증명 평가프로그램 실행(5년 간)을 위한 세부 확정 사항

- ⑥ 정보보안에 대한 사항도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포털 기업의 기존 약관을 활용하고, 기타 자료보존기간과 접근가 능 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 권고안을 참조
- ◆ 기존 정부조달 프로그램과의 관계 정립 필요성 제기 : 협조(보완)자? VS. 경쟁자?
 - → MAS 등 기존의 정부조달 프로그램과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 기업 간의 관계 정립 모호성에 대한 관계 정리 필요
 - → 2가지 프로그램이 양립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비효율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지적
- <u>☞ 현재의 입장</u>: MPT 금액구간 이내에서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u>MAS 등 현존 정부조</u> <u>달 제공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필요는 없음</u>; 이는 정책적 목표 실행 등을 위해 <u>기존 정부조달 프로</u> 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기관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u>☞ 장기적 입장</u>: MAS 등 정부프로그램은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장기적으로는 <u>전문화된 서비스 품목 및 IT 서비</u> 스 계약 등 보다 전문화되고 복잡한 정부계약 구매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제품과 서비스가 조합되어 구성된 솔루션 기반 복합조달 계약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해야 함

나. Procurement through Commercial E-Commercial Portals



Program Implementation Guidance : Phase 3



2020년 2월, 3단계 이행 결과

개념증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u>논의 사항</u> 요약

- 2019년 4월 결정사항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RFP) 실시: 2019년 7-8월(2개월)
- **❷** 2019년 4월 결정 사항에 대한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 기업 의견 수렴(RFP)**: 2019년 11월(1개월)
- © 2020년 2월: NDAA 제846조 이행을 위한 e-마켓 플레이스 플랫폼 공급업체 협상 개시
- ② 2020년 6월: 3개의 민간 인터넷 쇼핑몰 기업인 Amazon Business, Fisher Scientific, Overstock.com.과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8월 중으로 개념증명사업(파일럿 테스트)을 시작 → 향후 최대 3년 간 \$10,000 미만 의 소액구매계약에 대해 연방정부기관들이 민간 전자 상거래 포털로 개념증명사업 테스트 수행

☞ <u>논의가 진행 중인 검토사항</u>

- ① GSA MAS Schedule, GWAC, IDIO 계약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과 상업적 약관의 불일치 재검토
- ② 정부조달에 맞는 민간 쇼핑몰 계약 관리를 위한 현행 상업적 약관의 추가적인 개정 필요 문제
 - 대체 품목 지정, 추가 정보제공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징수 체계 개선, 정부조달시장 진입 자격요건 규정 미비 등
- ③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 조직 간 이해관계 대립 문제(OCI: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규정
- ④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목적의 실 거래 자료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및 관리(통제) 문제 해결 필요
- ⑤ 부당행위를 발생시킨 공급 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일관적인 정부조달시장 참여 제외 방침을 규정

다. 정부조달시장 민간 쇼핑몰 활용에 대한 미국 내 동향 분석



- 미국 비영리연구재단 Institute of Local Self-Reliance의 Amazon Business 정부조달시장 진입 분석
 - <u>아마존은 가격 조건에 대한 특정한 입장표명 없이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u>; MRO 제품과 같은 상용 물품의 경우, 지 방정부와 독립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최고 수백 가지 품목의 목록(품목)에 대해 <u>고정된 우대 가격 조건</u>을 요구; 아마 존 등 민간 전자상거래 포털들은 가격이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설정(pricing in competition; 아마존 사업 모형, 특 정품목에 특정가격을 보장하지 않은 동적가격책정(Dynamic Pricing) 설정)하여 시장 친화적 결정방식 입장표명
 - Amazon Business는 자사가 다수의 공급 기업을 관리하는 하나의 "시장지역(marketplace)" 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사의 플랫폼 내부에서 벌어지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합리적 가격이 설정된다고 주장; 그러나, 아마존 이용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주장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 TLCR INSTITUTE FOR Total Self-Religate
- Amazon Business가 제공하는 가격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MRO 관련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컨설팅 기업 OPSoftware가 2018년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PSoftware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들이 지출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인근 다른 공급 기업을 이용하지 않고 Amazon Business에서 동일한 MRO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경우 평균 10~12%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
- 미국 해군 대학원(Naval Postgraduate School)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GSA Advantage!와 Amazon의 30여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를 실시한 결과, Amazon Business가 항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
 - ◦조사대상이 된 품목의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GSA Advantage!의 가격이 Amazon Business에 비해 약 70% 정도의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
 -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u>정부조달규정인 "우대가격설정"과 "가격인하조항"의 영향에 따른 것이</u> <u>클 것으로 언급</u>하고 있음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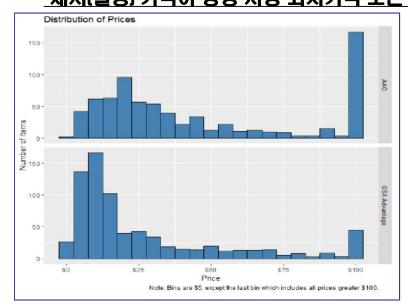
다. 정부조달시장 민간 쇼핑몰 활용에 대한 미국 내 동향 분석



■ 미국 비영리 공공조달기업 협회 The Coalition for Government Procurement의 가격 비교분석



- 2018년 12월 발표보고서에 따르면, AbilityOne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744개 품목에 대하여 <u>GSA Advantage!와</u> Amazon Business AbilityOne(AAO)의 가격을 직접 비교한 결과를 공개
- ① 최소 주문수량 조건(quantity to meet minimum order requirements) 조정 전 가격기준으로 볼 때, 744개 품목 중 741개 품목 또는 99.6%의 AAO 품목가격이 GSA Advantage! 가격보다 높음
- ② 최소 주문수량 조건 조정 이후 가격기준으로 볼 때에도, 744개 품목 중 <u>583개 품목</u> 또는 <u>72.34%</u>의 <u>AAO 품목가</u> 격이 GSA Advantage! 가격보다 높음
- ◎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7년 미국 해군대학원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민간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제시(설정) 가격이 항상 시장 최저가격 또는 최혜 고객 가격이 아님을 보여줌



Product Name on AAO	MPN	AAO Price	Advantage Price	Minimum Order
AbilityOne - Sewing Scissors 5110-01-241-4375	5110-01-241-4375	\$6.99	\$3.99	\$0.00
AbilityOne - Lockout Tagout Padlocks, Nylon, Red - 6 5340-01-650-2636	5340-01-650-2636	\$173.98	\$68.31	\$50.00
DHS/TSA-Approved Powder-Free Nitrile Exam Glove, Small	651500NTB0236	\$21.06	\$7.45	\$25.00
Gloves, Exam, Disposable, Powder Free, Textured, Latex, Small, Natural Color	651500NIB0307	\$27.97	\$10.47	\$25.00
Gloves, Exam, Disposable, Powder Free, Textured, Nitrile, Small, Blue	651500NIB0311	\$31.34	\$12.47	\$25.00
Vinyl Examination Gloves - Medium	653000NIB0105	\$12.14	\$6.30	\$15.00
Vinyl Examination Gloves - Large	653000NIB0106	\$12.14	\$6.30	\$15.00
AbilityOne - 12/24 Hour Slimline Wall Clock - 12 3/4 Diameter, Brown 6645-01-342-8199	6645-01-342-8199	\$34.15	\$18.54	\$50.00
AbilityOne - Slimline Wall Clock - 12 3/4 Diameter, Black Case 6645-01-389-7944	6645-01-389-7944	\$34.15	\$23.43	\$1.00
AbilityOne - Slimline Wall Clock - 9 1/4 Diameter, Black 6645-01-389-7958	6645-01-389-7958	\$46.46	\$17.64	\$1.00
SKILCRAFT Round Wall Clock, Hardwood Frame, 16" Dia, BK Print, MY Case (6645-01-421-6904)	6645-01-421-6904	\$176.77	\$38.05	\$25.00
AbilityOne - Atomic Slimline Wall Clock - 12-3/4 Diameter, Black 6645-01-491-9814	6645-01-491-9814	\$52.85	\$29.79	\$25.00
AbilityOne - SKILCRAFT Quartz-Movement Wall Clocks - Plastic Frame, 14.5" Diameter 6645-				
01-623-7483	6645-01-623-7483	\$45.42	\$26.45	\$11.50
AbilityOne - SKILCRAFT SelfSet Wall Clocks - Plastic Frame, 14.5" Diameter 6645-01-623-8823	6645-01-623-8823	\$45.19	\$30.19	\$11.50
AbilityOne - SKILCRAFT Quartz-Movement Wall Clocks - Plastic Frame, 16.51 Diameter 6645-				
01-623-8824	6645-01-623-8824	\$55.99	\$31.34	\$25.00
AbilityOne - ReFresh Air Freshener 6840-00-721-6055	6840-00-721-6055	\$6.43	\$2.58	\$1.00
LYSOL BRAND II AEROSOL DISINFECTANT SPRAYS ORIGINAL SCENT	684000NIB0039	\$18.46	\$8.68	\$15.00

라. 중국 지방(성)정부 조달 민간 쇼핑몰 활용 사례



- (조달 형태) 중국의 정부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별도의 조달 기구를 운영; 별도의 조달 대리 기관을 통한 조달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함
 - 모든 조달 관련 공고는 통합적으로 중국 정부조달망 홈페이지(www.ccgp.gov.추)를 통해 게시
 - 집중 구매(대량구매) 중앙 조달과 각 지방정부 분산 조달 공고도 조달방식별로 구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 공시
- 사례: (중국 하이난성 지방정부) 재정청 조달 품목 고시 (2018-2019년 고시)
 - **☞ 고시된 중앙조달품목을 제외한 분산 조달 대상품목 중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분산 조달로 시행**
- ※ 고시된 <u>집중조달목록</u> 중 <u>지정된 일부 제품</u>은 <u>온라인 쇼핑몰</u> 또는 협의 공급 방식 집행 규정
 - 구매 기관은 고시된 물품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협의 공급방식으로 구매 제품의 양에 관계없이 정부조달
 - ❷ 온라인 쇼핑몰 구매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경우, 수요 기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 우선권**을 부여
 - → 온라인 쇼핑몰에서 즉시 필요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 또는 A/S 등이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 협의 공급 방식으로 구매
 - → 지정 제품 중 온라인 쇼핑몰 구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협의 공급 방법에 따라 구매
 - ③ ① **온라인 쇼핑몰 및 협의 공급 대상 제품 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없고**, 예산액이 <u>10만 위안 이하</u>인 경우 → 정부에 구매예산을 보고하고 **조달 수요 기관이 직접 분산 조달** (조달 가격은 시장평균가격 ✔)
 - ② 온라인 쇼핑몰 및 혐의 공급 대상 제품 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없고, 예산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집중조달기관에 위탁하여 조달

라. 중국 지방(성)정부 조달 민간 쇼핑몰 활용 사례



하이난성 성급(2018-2019년) 정부집중조달목록 (쇼핑몰/협의공급)

품목 번호	목록 항목	明コ	쇼핑몰/협의공급 대상 여부
	1. 물품		
	1. 일반사무용품		
A020101	컴퓨터	데스크톱, 휴대용 컴퓨터, PDA, 태블릿	쇼핑몰/협일공급
A02010601	프린터	잉크젯, 레이저, 감열식, 충격식	쇼핑몰/협의공급
A020201	복사기	, <u>**</u>	쇼핑몰/협의공급
A02021001	고속 프린터	5.5	쇼핑몰/협의공급
A02081001	팩스	The same of the sa	쇼핑몰/협의공급
A0201060901	스캐너	당안·도면용 대형기기, 여권사진용 기기 등 제외	쇼핑몰/협의공급
A020202	투영기	측량 등 전용 제외	쇼핑몰/협의공급
A020204	복합기	인쇄, 복사, 팩스 등 기능을 가진 기기	쇼핑몰/협의공급
A02021101	문서세단기	-	쇼핑몰/협의공급
A02010508	이동식 저장장치	외장 하드디스크	쇼핑몰/협의공급
AD2010502	디스크 어레이		행의공급
A02010503	저장용 광선교환기		행의공급
	2. 전기설비		
A0206180203	공조(중앙 공조 포함)	스탠드형, 천정형, 벽걸이형, 중앙공조형	쇼핑몰/협의공급
A02091102	보통비디오카메라	보통비디오카메라	쇼핑몰/협의공급
A020205	카메라 및 부속품	디지털카메라 및 일반 카메라	쇼핑몰/협의공급
A02091001	일반 TV	P4	쇼핑몰/협의공급
A0206180101	냉장고	æ	쇼핑몰/협의공급
	3. 인터넷 기기	157	
A02010202	교환기	*	쇼핑몰/협의공급
A02010201	라우터	læ.	쇼핑몰/협의공급
A02061504	무정전전원장치	12	협의공급
A02010103	서비		협의공급
A02010301	방화벽	-	협의공급
A020108	4. 범용소프트웨이	운영채계, DBMS, 사무용 소프트웨어,백신미들웨어	협의공급
A0203	5. 공무용 자랑	승용차, SUB, 트릭, 미니버스, 중대형 버스, 이륜채신에너지치량포함! 협의공급	

라. 중국 지방(성)정부 조달 민간 쇼핑몰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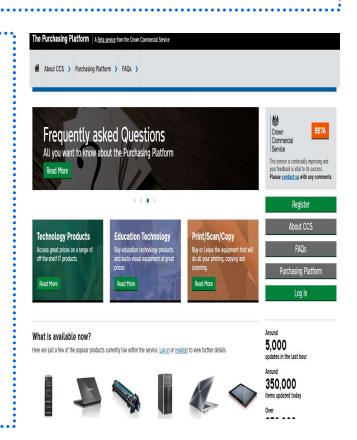
중국 정부조달시장 조달 민간 쇼핑몰 참여에 대한 주요 결과

- ① (민간 인터넷 쇼핑몰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목적)
 - 중국 정부는 2014년 이후 정부조달에 인터넷 쇼핑몰 및 협의공급방식 등 민간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정부조 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달 정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
 - 중앙 집중 물품 중 일부(17개 품목)에 대한 중앙조달기관의 관리업무를 민간 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 → 대부분 민간 거래가 활발하며 세부 품목별로 규격 및 가격 등 정부조달기관이 관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높은 품목들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음
- ② [민간 인터넷 쇼핑몰 적용대상 품목]
 - 중국 재정부가 고시한 집중조달목록 중 지정·고시된 17개 상용 물품에 구매 물품의 수량에 관계없이 민간 쇼핑몰 또는 협의 공급 방식으로 정부조달을 집행하도록 규정(금액 한도 있음) → 협의 공급 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③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민간 인터넷 쇼핑몰 대상기업)
 - 미국과 같이 정부 요청에 따른 자발적 정부조달시장 참여라기보다 정부기관이 선택한 민간 쇼핑몰 기업 중 일부가 정부조달시장에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정치 시스템과 일부 관련, 중국의 분산 조달 수행 방식 중 하나인 기선정된 외부 조달대행기관을 통한 정부조달 업무 일부 수행 과도 연관
 - 지방성 정부의 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쇼핑몰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존과 구별되는 세부 법령이나 규정 등을 찾아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정부기관 단위 별로 개별 민간 인터넷 쇼핑몰과 협의·계약된 방식에 따라 보편적 상업적 약관을 대체로 준용 판단
- ④ [가격관리]
 -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평균가격보다 정부조달가격이 높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
 - 민간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가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후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조달 기관에 해당 조달업무 요청하여야 함

마. 영국 CCS The Purchasing Platform 구축 사례



- 영국의 중앙조달기관인 CCS는 <u>2017년</u>부터 MRO 상용물품 범주에 포함되는 3개 품목(Technology product, Education Technology product, Print/Scan/Copy)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사이트 인 "Crown Marketplace(이하 CMp)"에 "The Purchasing Platform(이하 TPP)"를 개설하여 <u>정부주</u>도의 정부조달 온라인 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GSA Advantage!와 유사)을 시범 운영 중에 있음
- ① CMp 플랫폼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민간 쇼핑몰 기업인 <u>아마존 방식의 플랫폼</u>
 <u>서비스를 제공</u>함으로써 구매자와 공급기업 모두에게 공공부문 조달에 보다 쉽게 접근하며 민간에서 경험한 온라인 쇼핑몰 경험을 최대한 보장하여 수요기관들이 최고의 구매 가치와 경험을 가지도록 조달 거래 설계를 목표로 함
- ② 2020년 1월 현재, 총 400,000개에 이르는 제품 카탈로그가 제공되며 약 800여개에 달하는 조달 참여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음
 - → 이와 함께 2017년 CMp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조달 전용결제 시스템인 전자구매카드(ePCS, 이하 동일) 시스템을 개발 도입
- ③ 특히, CCS는 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유사한 단가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 정부조달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음



마. 영국 CCS The Purchasing Platform 구축 사례



■ 2020년 1월 현재, 여전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TPP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CCS가 발표하고 있음

항목	세부 내용
취급 품목	○ 기술제품, 교육 기술 제품, 프린트/스캔/복사 관련제품 등 <u>3가지 제품군</u>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량, 저가격 및 사무용품 등 MRO 상용제품으로 주문 이후 <u>즉시 배송서비스</u> 가 포함됨
결제 방법	○ 결제방법은 <u>직불카드</u> , <u>신용카드</u> 또는 영국 정부조달구매에 새로이 도입된 결제방식인 <u>ePCS 카드 모두</u> <u>이용</u>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 직접 지불 또는 수요 기관 결제프로세스 이용도 가능
이용 대상	○ 본 플랫폼 이용 가능 대상자는 <u>기본적으로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u> 로 <u>DPS 마켓플레이스(Dynamic</u> Purchasing System Marketplace)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
장단점	○ <u>장점</u> : ①약 40만개에 육박하는 제품들에 대해 <u>최대 2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는 동적가격(Dynamic Pricing)</u> 제공, ②해당 검색 일자의 시장목표가격인 <u>민간시장 벤치마킹 가격을 추가적으로 제시</u> , ③개별 제품에 따라 수요기관의 필요 요청사항(중소기업 인증 등)을 재분류 검색할 수 있는 <u>자동 구매가이드 제공</u> , ④여러 품목을 동시에 구매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Smart Basket 기능 제공과 <u>스마트 바스켓에 포함된 물품의 총 합산 가격을 자동 계산해 주는 기능 제공(</u> 배송비가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배송 비용을 포함하여 자동계산)

마. 영국 CCS The Purchasing Platform 구축 사례



영국 The Purchasing Platform 시범 서비스에 대한 주요 결과

-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최근에 인터넷 쇼핑몰 방식을 국가 조달에 도입한 사례로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 쇼핑몰 기업들이 자사의 경쟁우위 또는 장점으로 활용 하고 있는 차별화된 민간 서비스를 정부조달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를 수행
- ① [대상 품목] 기술, 교육 기술, 프린트/스캔/복사 관련제품 등 <u>3가지 제품 군에 한정</u>; 부분 소량, 저가격, 빈번한 반복 구매가 특징 인 MRO 상용제품들임
- ② [이용 대상 수요 기관] 정부조달 인터넷 플랫폼 이용 대상자(기관)는 수요기관의 공공부문 구매담당자로 DPS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 전체; 수요 기관 조달업무 담당자로 사용 인원을 한정하지 않아 수요 기관 편의성 증대
- ③ (지불방법) 전통적 방식인 수요 기관 직접 지불/수요 기관 결제 프로세스와 함께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영국 정부조달구매에 새로이 도입된 결제 방식인 ePCS 카드 등 모든 지불수단 이용 가능으로 수요기관의 플랫폼 이용 편리성을 향상
- ④ [가격관리] ⓐ 최대 2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는 <u>동적가격(Dynamic Pricing) 정책 운영</u>목표 → 민간 인터넷 쇼핑몰 기업들의 대표적인 가격책정 및 관리 시스템; ⓑ 검색 제품과 유사 또는 경쟁제품과 직접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가격정보를 제공 → 대부분 제품에서 검색 즉시 <u>최소 3개의 비교 가격</u>과 해당 날짜의 시장목표가격인 <u>민간 시장 벤치마크 가격</u>을 제공; ⓒ 검색을 통해 구매의사가 충분한 제품들을 임시 보관 할 수 있는 스마트 바스켓 기능 → <u>모든 선택 견적 가격</u>들을 <u>해당 시점에서 고정된 상태로 30일 동안 보유</u>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이러한 가격관리 정책들을 통하여 아마존 인터넷 쇼핑몰과 대비 평균 8%, 최대 30%의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
- ⑤ (기타 사항) 민간시장에서 구매 계약과 함께 임대계약(leasing)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프린트/스캔/복사기 제품군에 <u>대한 임</u> <u>대계약 서비스도 구매 계약과 함께 동시에 제공</u>



Ⅲ. 민간 쇼핑몰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 분석

● ABG: 정부 고객을 위한 사이트 구축 노력



Amazon Business Report (2019) 분석

- Amazon Business 는 2019년 현재 병원,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 수백만 개의 민간 기업 및 정부기관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 → 미국에서만 100대 등록 교육기관 중 약 80%, 포츈 100대 기업 약 55%, 100대 병원의 50% 이상, 인구 숫자가 많은 100개 미국 지방정부의 40% 이상에 Amazon Busine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함
- 특히 Amazon Business for Government는 미국 주정부 및 지 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아마존 기업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 지방 정부 및 학교 등 전국 9만 개 이상의 조달구매처와 협력하고 있는 비 비영리단체 U. S. Communities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공공기관 조달 지원







Amazon B2B 주요 품목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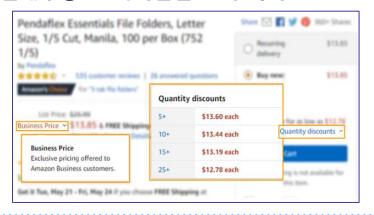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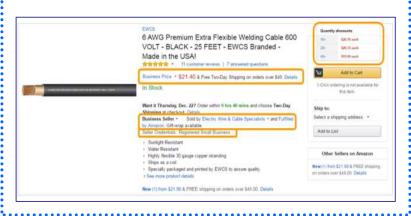


ABG: 정부 고객을 위한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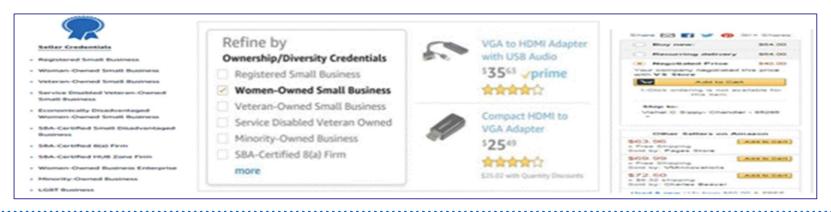
판매수량 별 가격할인 표시 서비스



기관 고객 전용 가격 표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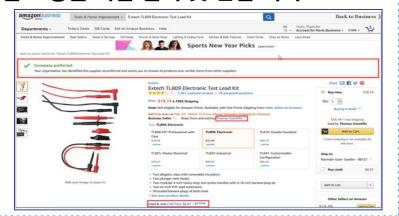
정부 고객 맞춤형 공급 기업 자격 인증 표시와 유사제품 동시 가격 비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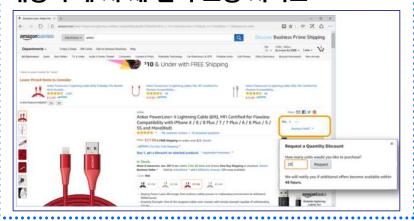


ABG: 정부 고객을 위한 주요 기능

선호 공급 기업 선택 및 알림 서비스



대량 구매 시 재 견적 요청 서비스



배송처리 서비스 ; 관련 비용은 조달 참여 공급 기업에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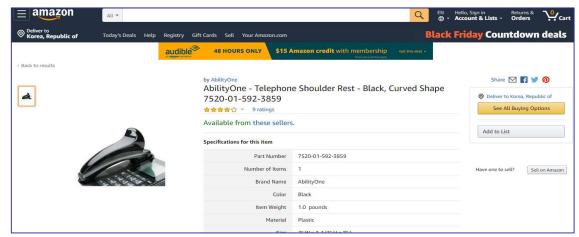
- Amazon Business의 주문 이후 배송은 공급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접 주문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와 Amazon Business의 전문화된 Fulfillment by Amazon(FBA,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자체 유통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공급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Amazon Business가 가진 독특한 차별화 전략)
- 실제로 다양한 기업 규모의 공급 기업들이 FB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배송처리 는 아마존 주문처리 센터에 보관 처리하게 됨



Amazon Business AbilityOne 전용 Page

■ 정부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AbilityOne 프로그램에 속하는 대상 기업의 제품을 따로 분류하여 서비스 제공(2019년)









IV. 결과 요약과 시사점

가. 해외 사례연구 결과 요약나. 해외 사례연구에 따른 시사점 요약

가. 해외 사례연구 결과 요약



■ 민간 쇼핑몰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에 대한 해외 사례연구 결과, 해외 조달 기관의 민간 쇼핑몰 정부조달시장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도입방법 등에 공통 사항도 존재하지만, 국가 별 조달 환경(수요 기관 특성, 조달 참여 가능 기업 현황 등)과 해당 국가 민간 인터넷 쇼핑몰 시장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주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비교 항목	미국	중국	영국
최초 참여 요청 주체	미국 의회 (입법부)	중 국 財政部 (중앙조달관리기관)	Crown Commercial Service (중앙조달기관)
주요 실행 목표	조달시장 경쟁 제고, 조달업무 간소화 및 현대화(최신기술), 수요 기관 구매 경험 선진화	조달업무 효율화(분산), 조달 업무에 최신기술 활용	조달 업무에 최신기술 도입, 수요 기관 구매 경험 선진화, 조달구매 업무의 현대화
참여 허용 대상 품목	전체 상용제품 (II, 의료관련 제품 군 제외)	중앙 집중 조달 품목 중 지정된 17개 MRO 품목	기술, 프린트 제품 등 3개 MRO 상용제품군
조달 관련 법령 개정	민간 인터넷 쇼핑몰의 상업적 약관 최대한 이용 (조달 관련 법령 개정 최소화)	민간 인터넷 쇼핑몰의 상업적 약관 최대한 이용 (조달 관련 법령 개정 최소화)	CCS 자체 이용약관
참여 대상 전자상거래 모형	E-마켓 플레이스 모형	E-마켓 플레이스 모형	E-마켓 플레이스 모형 (E-조달 모형도 검토)
특징시항	민간 인터넷 쇼핑몰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정부조달시장에서 민간 인터넷 쇼핑몰 기능의 활용	정부조달시장에 민간 인터넷 쇼핑몰과 유시한 환경 조성

나. 해외 사례연구 시사점 요약



민간 쇼핑몰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에 대한 *시사점 [1]*

- ① [민간 인터넷 쇼핑몰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주요 목적 설정]
 - → 정부조달시장에 최신 유통 기술 및 시스템 도입으로 조달 행정의 현대화 추진 및 수요기관의 민간 구매 경험 최대 보장 등으로 민간 인터넷 쇼핑몰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목적을 명확히 설정
 - ☑ 미국의 경우 참여 결정 초기 주요 추진 목적에는 민간과 유사한 수준의 조달시장 내부 경쟁 구조 확립과 최혜고객가격 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실행지침 등이 만들어지면서 선진 조달기법 도입, 수요기관의 구매 업무 효율화 등으로 목적의 우선순위 변화

② [계약 대상품목]

- → 기본적으로 민수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수 규격을 바탕으로 한 일반 상용 제품을 주요 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 물품의 규격 설정 및 계약 가격 설정 부분에서 혼란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 ☑ 우리나라와 같이 민수 및 관수 규격 제품이 단가 계약 품목에 혼재되어 있거나 민수 규격이 아닌 관수규격으로 규격 설정 및 계약 가격 설정이 이루어지는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규격 조정 및 가격결정 기준 논의가 필요함
- ③ (조달 참여(계약) 대상 기업)
 - →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및 중국의 민간 인터넷 쇼핑몰 계약 대상자는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유통기업 및 해외 기업도 계약상대자로 포함시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임
 -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 및 판로지원 등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직접 생산하는 제조기업 위주로 정부조달계약이 수행되고 있어, 민간 쇼핑몰에 참여하고 있는 유통기업 및 해외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문제가 논의되어야 함

나. 해외 사례연구 시사점 요약



민간 쇼핑몰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에 대한 *시사점 [2]*

- ④ [민간 시장질서 개입 최소화 및 조달 관련 법령 개정 최소화 문제]
 - → 민간 시장질서 개입 최소화 및 복잡한 법령/규정 개정 조치에 따른 정부조달 관계자 및 수요 기관과 조달 참여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구매 가능한 정부조달 금액 범위를 조정 등)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문제에 대한 정리 필요
- ⑤ (국가주도의 정부조달 인터넷 쇼핑몰 존재 유무)
 - → 중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정부조달 인터넷 쇼핑몰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GSA Advantage!도 우리나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과 같은 전반적인 원스톱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현대화된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의 정부조달시장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가 요청하는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인터넷 쇼핑몰 기업의 존재유무를 먼저 확인 필요
 - ☑ 미국과 중국의 경우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민간 인터넷 쇼핑몰 기업들이 매우 거대한 규모로 자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 유율을 가진 기업들이며, 자체적인 기업 전용 B2B 사이트를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고, 고도로 발전된 매우 현대화된 자체 배송시스템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⑥ (민간 쇼핑몰 프로그램과 기존 정부조달 프로그램 간 관계)
 - → 장기적으로 민간 쇼핑몰 제공 프로그램과 MAS 등 기존 정부조달 프로그램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원-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 ☑ 유사한 정부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경쟁관계? 아니면 정부조달의 일부를 민간 쇼핑몰 기업들이 보완해 주는 보완자 입장?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현재 존재; 장기적으로 GSA가 운영하던 정부 인터넷 플랫폼의 효용성 및 철수 문제 야기



Q & A



전문기관 협업구매제도 도입방안

(국공립 의료기관 조달사례 중심으로)

변호사 정 원

現 법무법인(유한) 율촌 구성원 변호사 現 기획재정부 자문변호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現 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 계약분쟁조정위원 現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반부패 자문위원 現 한국국제협력단 원조조달 자문위원 現 서대문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現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초빙교수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유) 율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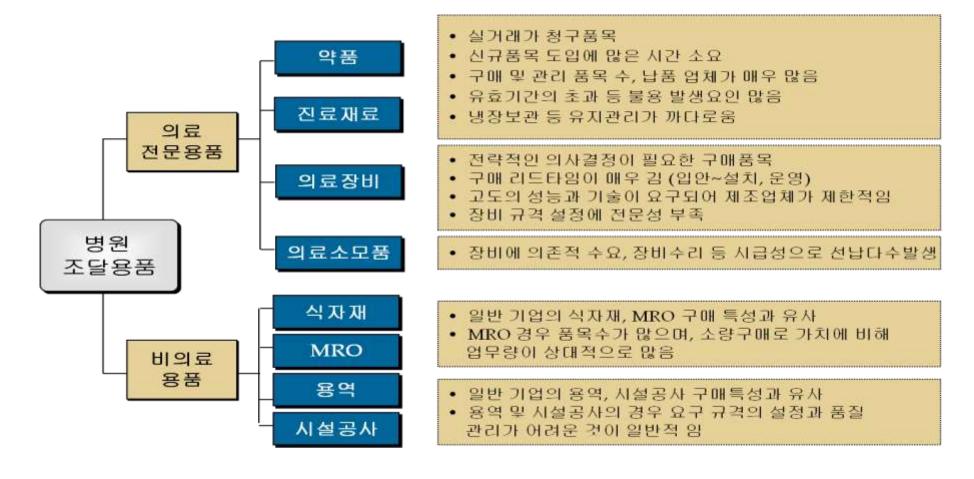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의료기관 의료용품 조달의 특수성
- Ⅲ. 의료기관 조달에서의 민간구매 전문기관(GPO)의 역할
- Ⅲ. 국공립 의료기관 현황 지위에 따른 분류
- Ⅳ. 기관별 계약사무 민간위탁 허용 현황
- V. 의료분야 전문기관 활용 기회 제공의 필요성
- Ⅵ. 참고. 주요 선진국의 의료분야 민간 전문기관 활용 사례

I. 의료기관 의료용품 조달의 특수성 (1)

✓ 의료물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구매 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합니다

- 단가가 아주 낮은 거즈, 밴드, 탈지면 등과 같은 소모품부터 단가가 수억 원이 넘는 전문 의료기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100만가지 이상).
- 다음과 같이 의료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매 시 <u>의료적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u>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물품의 조달과는 그 특성을 달리합니다.



I. 의료기관 의료용품 조달의 특수성 (2)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2015 등 참고

✓ 의료물품의 조달은 환자의 건강 및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 의료물품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료물품 조달 시에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의료물품의 조달 및 **재고관리와 관련된 공급망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환자에게 하자 있는 의료물품이 공급되거나 또는 필요한 의료물품이 조달이 늦어지는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의 건강 및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의료물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의료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최우선 반영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의료물품이라도 의료기관들마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수십여 개의 부서들마다 의료진의 의료물품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등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실제 공급되는 제품의 구성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 의료인의 의료물품에 대한 선호도 등으로 인해 일반 물품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이 낮은 점이 있는 반면, 새로운 의료물품에 대한 정보접근도 용이하지 않아, 의료물품의 표준화와 가격 중심의 조달이 어렵습니다.

✓ 정부의 엄격한 의료용품 가격 규제

•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비를 지출하는 구조이므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급) '를 시행하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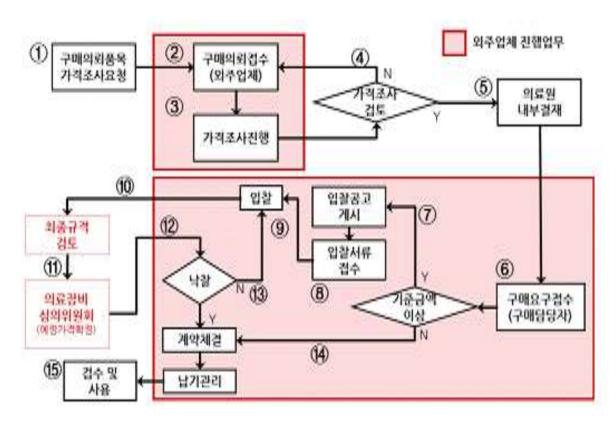
✓ 국내 의료물품 유통시장의 도매업체 영세성 및 다품종 소량거래 등 비효율적 유통체계

• 대리점 중심의 영세한 도매업체들을 통한 유통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류자동화 및 정보화 기반조성이 곤란하여 물류체계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п. 의료기관 조달에서의 민간구매 전문기관의 역할(1)_개념 및 역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의료장비 구매관리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의 GPO 활용한 구매 프로세스와 의료기관 및 GPO 역할>

단계별로 병원의 가격검증 및 승인절차, 사후 감사 및 관리감독 등 핵심업무는 의료기관이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구매대행사의 업무수행 범위 및 프로세스 】

의료분야 구매전문기관은 다수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종합병원, 의료원등)로부터 의료행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기기들의 구매볼륨을 집계하여 가격협상 및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전문기관은 <u>규모의 경제(Buying Power)</u>및 <u>방대한 의료기기 가격정보(DB)</u> <u>를 활용</u>하고 <u>전문 구매인력</u>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의료기관은 구매 단가를 낮추어 <u>구매비용을 절감</u>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 구매전문기관은 <u>의료기관들의 필요에 의해 병원경영 효율화 및</u>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u>근래에는 ICT</u>

System 기반 의료기기 물류관리(재고관리, 추적/안전관리)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공급업체간 구매조달을 대행하며 **구매물품의 해당병원 부서 별 납품까지 Supply-Chain 전반을 관리**합니다.

п. 의료기관 조달에서의 민간구매대행사의 역할(2)_민간구매대행사를 통한 구매의 장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의료장비 구매관리체계 개선 연구보고서 中



- ✓ 병원 업무의 효율화
- ✓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 가격 및 조건의 적정성 판단에 기여
- ✓ 내부 인적자원의 학습효과 기대



п. 의료기관 조달에서의 민간구매대행사의 역할(3) 의료기관 구매위탁을 통한 비용 절감 현황 1

* 주요 언론 구매대행사 도입 절감사례 보도내용 발췌

✓ 서울대학교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대학교병원은 2015년 35,157개 보험품목(의약품 및 진료재료)을 상한가 대비 167억원 가량절감하였으며, 2016년은 36,677개 품목에 대해 약 243억원, 2017년은 37,833개 품목에 대해 약 272억원을 절감 하는 등 지난 3년간 보험품목 상한가 6,716억원을 6,034억원에 구매함으로써 상한가 대비 10.2%인 682억원을 절감
-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 한해 동안 1,810개 품목 계약을 진행하고 상한가 대비 18%인 약 47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상한가대비 9.8%인 63억원을 추가로 절감

<u>'서울대 등 국공립병원 5곳 건보재정 1158억 절감</u>' (2017. 03. 07., 의학신문)

✓ 지방의료원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298개의 보험품목에 대해 상한가 128억 대비 51억에 구매를 완료, 2017
 년 한 해에만 약 67억원을 절감하면서 무려 52% 이상의 절감률 달성
- 2017년 원주의료원은 29%, 속초의료원 26%, 충주의료원 21%의 높은 절감 성과를 보였으며, 강원도 삼척의료원과 영월의료원에서도 상한가 대비 17%이상을 절감하는 등 대다수의 의료원에서 두 자릿수의 절감률을 기록
- 군산의료원은 의료장비 공동구매로 2018년 상반기 동안 약 10% 구매예산을 절감
- 2016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12곳 지방의료원은 한해 동안 의료원 구매예산 대비 총 36억원을 절감
-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 등 충청북도 소재 의료원 2곳은 2018 년 공동구매를 통해 의약품 계정에서 의료원 구매예산 대비 총 32.6억원을 절감했으며 두 병원의 평균 인하율은 무려 35.7%에 이름

기타공공기관 병원 구매실적↔ (2014~2016년/3개년).

(단위:백만원)

		1 TO		
병원명	구분	절감금액	절감율	
No clista High	급여	67,952	10.89%	
서울대학교병원	전체	41,164	4.31%	
North to the Miles	급여	784	11.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체	890	3.6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급여	31,532	12.12%	
	전체	12931	3.41%	
강원대학교병원	급여	5,646	9.36%	
	전체	7,843	8.04%	
국립중앙의료원	급여	9,844	14.05%	
<u> </u>	전체	3,883	4.58%	
급여품목 절감액 Total		115,758		
병원예산 절감액 Total		66,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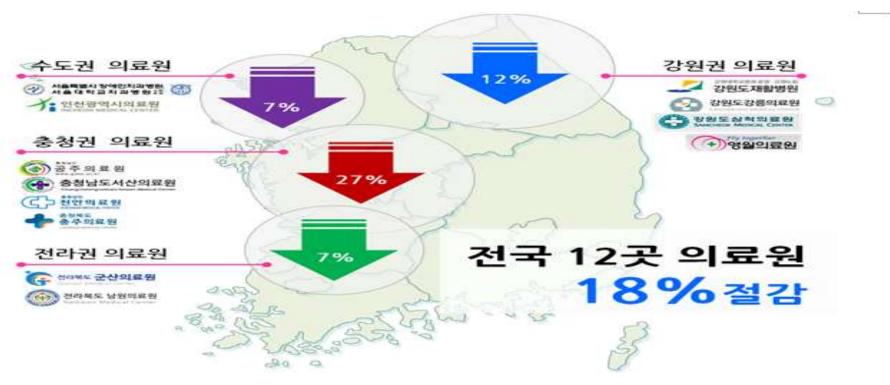
- * 급여품목 절감금액 : 보험상한가 대비 절감금액 :
- *전체 위탁품목 절감금액 : 병원구매예산 대비 절감금액.
- '<u>강원도 내 의료원 6곳, 공동구매로 예산절감</u>' (2017. 12.13., 메디파나뉴스) • '<u>군산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상반기 예산 10% 절감'</u> (2018. 08. 09., 보건뉴스)
 - '<u>충북권 의료원 의약품 공동구매로 32억 아꼈다'</u> (2018. 05. 09., 의학신문)
 - '예산 23억 절감 복지부 반납한 공주의료원 비결' (2019. 01. 29., 데일리메디)

п. 의료기관 조달에서의 민간구매대행사의 역할(3)_의료기관 구매위탁을 통한 비용 절감 현황 2

* 주요 언론 구매대행사 도입 절감사례 보도내용 발췌

✓ 공주의료원 신축 개원 절감

- 2016년 신축 의료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MRO품목 등의 구매를 <u>민간 구매 전문기관에 위탁, 예산대비 절감율이 무려 30%에 달함</u>
- 당시 신축 이전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장비 구입비로 70억을 지원받았으나, 공주의료원이 거액의 의료장비를 구매한 경험이 없으므로, GPO 구매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장비구입비 23억을 절감 하였고 이중, 보건복지부로부터 필요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2억원을 구매토록 허가를 받고 추가 구매한 후, 21억원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여 국비를 절감 '예산 23억 절감 복지부 반납한 공주의료원 비결' (2019. 01. 29., 데일리메디)



【 2016년 지방의료원 계약사무 전문기관 구매위탁 결과】

Ⅲ. 의료기관 조달에서의 민간구매대행사의 역할(3)_의료기관 구매위탁을 통한 비용 절감 현황 3

* 주요 언론 구매대행사 도입 절감사례 보도내용 발췌

✓ 세종충남대병원, 개원장비 구매예산 24% 절감



-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윤환중)이 지난 7월 16일 충남 세종시에 개원한 세종충 남대병원(원장 나용길)이 정부부처,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개원에 필요한 의 료장비 등의 구매를 애초 예산 대비 무려 24%인 1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 으로 나타났다.
- 3,550종의 의료비품, 의료소모품 등에서도 예산 대비 22%인 14억원을 절감하
 는 등 총 4,310품목의 구매를 진행한 결과 140억원 절감을 이끌어 냈다.
- 세종충남대병원이 이 같은 혁신적인 구매절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기재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탄력적이고도 유연한 정책과 기존 구매프로 세스를 과감히 탈피한 의료기관의 경영혁신, 민간 GPO가 보유한 수십만건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 기재부와 교육부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과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규제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각각의 의료기관 의 특성에 맞게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기존 자체 구매에만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규 구매프로세스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병원예산, 기초금액, 조사금액 등 단계별 전략과 특히 분산된 입찰 정보를 통합해 내고, GPO와 협업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u>'세종충남대병원, 개원장비 구매예산 24% 절감'</u> (2020. 9. 14., 약업신문)

п. 의료기관 조달에서의 민간구매대행사의 역할(4)_조달청과의 비교

- ✓ 조달 전 과정에 이르는 의료용품 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기관들이 민간 구매대행사를 통해 의료물품을 구매하려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u>단순한 입찰 및 계약대행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조달청과 달</u> 리 GPO는 입찰 전 요청물품의 시장가격조사/분석에서 대체품 및 전략구매 방법론의 제안(경쟁입찰 강화 방법론 등)과 입찰 후 물품 수급관리에 이르는 조달 전 과정을 서비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조달청과 민간구매대행사의 업무수행 범위 비교 예시 】

구 분	민간 구매대행사	조달청	차이점
입찰기능	0	0	- 입찰 후 계약까지의 기능만 있음 (조달청) - 의료기관에 특화된 모든 공급업체 회원가입, 입찰참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0	X	- 전자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출력 (수작업 감소)
병원시스템 연동	0	X	- 선납시스템, 물품 자동보충시스템 등 부가기능 활용
계약 사후관리	0	X	- 변경/연장계약, 납품관리, 통관, 검수지원, 수급지원 등

Ⅲ . 국공립 의료기관 현황_지위에 따른 분류

기관 예시 구분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훈병원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예산규모 250억원 이상)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강원도 원주의료원 등 전국 30여개 지방의료원 정부 산하 기관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군/책임운영기관) 국가/지자체 부속 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서울시의료원

참고: 관련 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u> <u>를 정할 수 있다</u>.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u>.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IV . 기관별 계약사무 민간위탁 허용 현황

기관 예시 구분 허용 현황 기획재정부 별도승인 필요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기타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예산규모 250억원 이상) 기획재정부 별도승인 필요 가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 지방의료원들은 위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 강원도 원주의료원 등 전국 30여개 부 장관으로부터 계약사무 전문기관으로 지정 지방의료원 된 민간 전문기관에 그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23여개 지방의료원이 민간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하고 있음 정부 산하 기관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군/책임운영기관) 명시적 근거 필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서울시의료원

V. 의료분야 전문기관 활용 기회 제공의 필요성

- 매년 반복되어 온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 문제 경우, 전체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은 줄곧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 2017년 공시한 실적에서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 정작 의료손익의 경우, 여전히 920억원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손익 적자규모는 3년간 총 4,48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취약계층 진료 제공 등의 시설운영 취지를 감안할 때 공익적 적자가 불가피한 영역으로 여겨져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원의 선택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공병원의 구조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구매전문기관을 도입하였습니다.
- 비진료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민관협력은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원은 의료서비스에 집중하는 한편 비핵심 분야인 <u>구매물류 업무</u>를 전문 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들과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들의 성공적 절감사례는 제도적 보완과 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구매정보 부족 등으로 구매절감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기타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들에게도 공공병원 경영 효율화의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나 관련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부재와 의료기관이 구매대행을 도입하기까지의 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국 공립의료기관들이 민간 전문기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 보건의료 관련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확대 및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절차간소화 등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VI. 참고. 주요 선진국의 의료분야 민간 전문기관 활용 사례

의료분야 민간 구매 위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국들의 경우 제도적 안정화가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미국	 미국의 대형 GPO 업체들의 협회인 HSCA(Healthcare Supply Chain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 내 5,000여개 병원의 96~98% 가 1개 이상의 GPO에 가입 병원 당 평균 2~4개의 GPO를 통해 구매 계약사무를 대행 미국에는 600여개의 GPO사가 운영됨 의료기관의 구매 관련 비용이 연평균 10 ~ 18% 절감 미국 GPO 협회인 HSCA에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10년간 약 \$864.4 billion(약 1,000조원) 건강보험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영 국	◆ 대형병원의 약 85% 이상이 소속돼 있는 보건성 산하기관 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관리 ◆ 구매·물류관련 사무도 NHS 산하기관인 PASA(Purchase and Supply Agency)를 통해 관리해왔으나 전문성 결여 및 비용 낭비로 2006년 민간물류기업 DHL과 함께 NHS Supply Chain이라는 법인을 설립 ◆ 10년 계약으로 위탁하며 DHL의 세계적 노하우를 통해 효율화
독 일	◆ 전체 병원의 약 80%가 GPO를 통해 구매
일 본	◆ 1990년대부터 일본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물품관리의 효율화와 경영개선 수단으로 전문 인력을 제외한 물류관리사무를 외주를 통해 비용절감을 실현

참고 사례 : 철도청, 2003년 계약사무 민간 위탁 사례

철도청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의선 공사 구간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천국제공항철도공사가 겹치는 용산역~가좌역 구간의 계약사무를 인천국제공항철도공사 사업시행자(SPC)인 공항철도주식회사에 위탁(위수탁 협약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사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일부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의선 공사 구간이 중첩되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서 시공사가 상이할 경우에는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철도청으로부터 용산역~가좌역 공사구간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실시협약 내용 중 발췌>

김포공항역 등 본 철도와 관련하여 공동사용 협의가 필요한 13.2.2 부분이나 본선 구간의 기존 및 건설예정인 철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의 범위, 방법 및 그 비용 등은 정부와 관계관청 또는 관련사업시행자와의 혐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정부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원하며 동 협의가 60 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병행구간에 대하여는 본 본 철도와 철도청 경의선 철도첫 경의선 병행구간의 설계 및 공사의 효율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본 사업의 사업비와는 별도로 정부가 철도청 경의선 병행구간에 대한 철도청 해당분의 설계 용역비용 및 공사비를 부담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부와 협의하여 위임한자로 하여금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시행하도록 하며, 철도청 경의선 병행구간의 설계 및 공사로 인한 관련비용 및 조건 등은 향후 정부 및 사업시행자가 혐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